

#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81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11. 13.  
제안자 : 금광연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신설 조항의 규정을 구체화함. (안 제19조제2항제4호)

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9조제2항제4호 중 “공공복리를 위한 생활편익”을 “공공업무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9조(가설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공공복리를 위한 생활편익 시설 및 주민운동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용 건축물</u></p>	<p>제19조(가설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공공업무</u> ----- ----- -----</p>